

日帝時代 政治行政 研究(三)

金雲泰

目 次

- 一. 日帝時代研究의 政治行政史의 意義
- 二. 總督政治의 成立과 展開
 - 1. 1910~1919의 政治史의 研究
 - 2. 總督政治統制의 成立과 展開
 - (1) 韓日合併과 朝鮮總督府의 設置
 - (2) 總督政治의 性格과 時代區分
- 三. 總督政治—(以上前號既載分)
- 四. 3.1 民族獨立運動과 臨時政府樹立 및 그 正統化過程
 - 1. 3.1 運動
 - 2. 諸臨時革命政府의 樹立
 - 3. 大統領制로의 諸政府統合
- 五. 結 語

四. 民族獨立運動과 臨時政府의 樹立 및 그 正統化過程

1. 3.1 運動

3.1 運動-: 우리 民族이 1919年 3月 1일을 기하여 舉族的으로 봉기했던 抗日鬪爭이었으며 日帝에 依하여 침탈되었던 國家의 主權과 民族의 獨立를 되찾기 위한 一大 示威運動이었다. 그것은 韓國이 最初의 不平等條約을 日本과의 사이에 맺게된 1876年的 韓日丙子修好條約締結이래 日帝가 經濟的 浸透와 軍事的 政治的 陰謀로 계속 行為하여 온 한국侵略에 對한 韓民族의 줄기찬 抗日鬪爭의 한 歸結이었으며 가까이는 1905年 乙巳勒約에서 1910年「日韓併合」以來의 日帝의 武斷과 收奪에 抗拒했던 韩民族의 獨立運動이 있다. 그것은 또 當時の 世界史의 國際情勢의 轉變하는 背景속에서 그 必然性과 當爲性이 뒷받침 되었던 韩民族의 主體的 創造能力의 結晶이기도 했던 것이다.

즉 1914 年 世界第一次大戰이 일어나자 日帝도 이에 채빨리 參戰하였고, 1917 年에는 러시아에 革命이 일어나 同盟國側과 單獨講和를 하고 戰線에서 離脫하여 「소비에트」政權을 確立하였으며 1918 年 1月에는 美合衆國의 「월슨」大統領이 소위 14 개條의 講和條約을 發表하였다. 美大統領은 몸소 파리에 가서 講和會議의 事實上 主導役割을 담당하였으며 日本도 5 大強國의 10 人會議에 參列하여 講和會議의 가장 重要한 機關에 參與하였던 것이다.

그리나 3.1 運動이 이와같은 當時의 世界史的 國際情勢의 聯關係를 背景으로 발발한 것이기는 하지민 어디까지나 韓民族이 主體가 되어 實踐된 것이었으며 그려기에 그것은 韓民族의 民族意識, [發達과 民族獨立運動의 歷史的 展開속에서 主體的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狀況속에 進行된 3.1 獨立運動은 人民의 總意로서 革命的 建國(大韓民國)을 發議하고 이에 根據하여 새로운 憲法을 만들고 大韓民國臨時政府를樹立한 것이다. 日帝의 強壓的 環境에서 33人の 民族代表가 署名한 獨立宣言이 公布된데 이어 國內外에서樹立된 數個의 政府는 이해 9 월에 마침내 하나로 統合되었다. 그것이 大韓民國臨時政府이고 上海에 臨時로 位置한 것이었다. 이 해가 大韓民國元年이고 解放되는 1945 年이 大韓民國 27 年이었다. 이 政府의樹立이야 말로 3.1 運動의 結實이요 精華라 하겠다.

2. 諸臨時革命政府의 樹立

前述한 三.一(1919 己未年) 運動에서 獨立宣言과 그 示威가 全國各地는 물론 日本, 滿州, 露西亞, 朝國, 「하와이」, 그리고 美本土등 海外에 散在해 있던 僑胞들 사이에 까지 퍼져 마침 이에 深刻한 慲畏과 용기를 얻은 國內의 獨立運動者들은 獨立을 宣言했으므로 마땅히 政府를 組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臨時政府樹立을 宣布하였고 또한 海外의 職業的 獨立運動家들도 종래의 同志的 또는 地域的 獨立運動團體보다도 高次의인 中央政府級의 最高政治指導機關을樹立할 必要를 통감하고 이 機會에 國號를 결정하고 臨時政府를 각기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已未獨立宣言書는 그 冒頭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の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하였으나 이에 서명한 孫秉熙등 33 人の 「朝鮮民族代表」는 事實上 自主獨立國家의 政府樹立을 內外에 提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 이라하여 歷史的인 獨立宣言과 運動이 展開되고 있던 3月과 4月사이에 露額「블라디보스톡」에서 大韓國民議會(3.21), 中國上海에

(1) 獨立을 宣言했으므로 마땅히 政府를 組織해야 한다는 것이 國內外의 獨立運動者들 사이에 支配的이 意見이었다. 後日 잠시 臨時大統領이 되었던 朴殷植은 그것이 「世界革命史之慣例」라고 다---과 같이 말했다. 「吾族爲脫離日本羈絆而有革命運動 宣佈獨立于世界 發表自決主義矣夫革命事業 方在發軔未到結局也 即必有臨時政府之最高機關 為國民之標準 占國交之地位 亦世界革命之慣例也 三月一日以後 各處獨立團 均有此想」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서울신문社出版局發行 1946, p. 108, 第12章

(2) 이 나에도 日帝高等警察이 발견 압수한 文書에 의하면 朝鮮民國臨時政府 및 新韓民國政府(또는 新韓政府)가 있었다. 前者は 4月 13日 京城에서 그리고 後者は 4月 17日 鐵山 宣川 及 義州 地方에서 各己文書 또는 宣言書등이 發見된 바있어 紙上政府로 추측된다.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I. 明治百年史叢書 昭和 42年 pp. 13-17, 22. 國史編纂委員會刊「韓國獨立運動史」第二卷 pp. 931-2, 934.

서 大韓民國臨時政府(4.11) 및 國內 서울에서 漢城臨時政府(4.23) 등 세곳에서 臨時政府의 樹立이 각각 宣布되었다.⁽²⁾ 이처럼 세갈래로 거의 동시에 獨立運動을 지도할 政府가樹立된 것은 그 推進人士들의 立場과 思想的 背景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相互 事前 協議와 連絡의 不可分에 起因한 것이지 별다른 對立 또는 競爭意識에서 나온 行動은 물론 아니었다. 이는 三處에서 發表된 閣僚名單이 거의 중복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³⁾

(3) 諸 政 府 閣 僚 名 單 (一 표 이 機構에 있는 것
○ 표 未充員, 括弧內는 次長)

各政府 部署	國民議會(7)	朝鮮民國(11)	新韓民國(6)	漢城政府(10)	上海政府(7)
首 班	孫 乘熙 (大統領)	孫 乘熙 (正都領)	李 東輝 (執政官)	李 承晚 (執政官總裁)	李 承晚 (國務總理)
副 首 班	朴 泳孝 (副統領)	李 承晚 (副都領)	—	—	—
首 相	李 承晚 (國務總理)	李 承晚 (總務卿)	李 承晚 (總理)	李 東輝 (國務總理總長)	—
外 務	—	閔 讀鎬	朴 容萬 (金奎植)	朴 容萬	金 奎植 (總長)
內 務	安 昌浩	金 允植	○ (曹成煥)	李 東寧	安 昌浩
軍 務	李 東輝	盧 伯麟	—	盧 伯麟	李 東輝
財 務 (度支)	尹 顯振	李 相	李 始榮 (李春鑒)	李 始榮 (韓雨洙)	崔 在亨
學 務	—	安 昌浩	—	金 奎植	—
法 務	—	尹 益善	—	申 圭植	李 始榮
交 通	—	趙 鐘殷	文 昌範 (李昌敘)	文 昌範	文 昌範
產 業 (殖產)	南 亨祐	吳 世昌	—	—	—
勞 僱	—	—	安 昌浩 (閔讀鎬)	安 昌浩	—
參謀部總長	柳 東說	—	—	柳 東說	—

洪淳鎬: 上海臨時政府의 正統化過程 新東亞 1968年 3月號 p. 323. 參考

上記名單에서 보다시피 國民議會의 7人中 3인의 李承晚 安昌浩 李東輝는 각 政府에 공통으로 보이며 尹顯振과 南亨祐는 上海政府에 후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朝鮮民國臨時政府와 新韓民國政府는 紙上政府로(後述) 李承晚 安昌浩만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新韓民國政府와 上海政府 및 漢城政府는 거의 동일 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朝鮮民國臨時政府에도 折半의 人物이 중

諸臨時政府가各地에서樹立된沿革을보전대우선露領과北間島,西間島에散在해있던獨立運動者들은3月17일「불라디보스톡」의韓人村에會集하여獨立宣言과함께大韓國民議會를組織했는데⁽⁴⁾그母體가된것은文昌範,尹海,金立등이1917년에조직한全露韓族會中央會였다.⁽⁵⁾大韓國民議會는韓末의巨物軍人李東輝와文昌範(會長)등이center이된것으로21F에는5개條의決議案을채택하고이미日警에檢舉된孫秉熙를大統領으로하고美國의李承晚을國務總理로하는政府組織을發表했다. 그러나이大韓國民議會는上海의大韓國民臨時政府와서울의漢城政府가臨時憲章또는約法을制定한데비해이것에해당한것을制定하지않은것은보다短期的인眼目에서의當面行動에더關心을기울였던것같다. 그5개條의決議案은(1)大韓國民議會는祖國獨立의達成을期約하며世界民族自決主義에基因하여韓國民族의正當한自主獨立을主張함.

(2)韓日合邦條約은日本의彈壓的手段으로成立한것이고우리民族의意思가아니므로그存續을否認하며日本의統治撤廢를主張함.

(3)佛蘭西巴里에서열리는平和會議에代表를派遣하여우리의獨立運動과政府建設의承認을要하며國際聯盟에參加를主張함.

(4)韓國獨立運動의實情을世界에宣傳하며政府建設의事實을各國政府에通知하여우리의主權을主張함.

(5)以上의目的이人道主義의公正한判決을받지못하면日本에對하여血戰布告를主張함⁽⁶⁾등이었다.

이決議의5項에서對日血戰宣布도不辭한다하는強硬한行動方針을시사한것은그들의主戰의時局觀을反映한것으로서日帝에대한「사보타지」를主張한漢城政府의6개條決議事項이나外國人の生命財產의保護와政治犯의特赦등을규정한上海臨時政府의6개조政綱과종종對照를이룬다하겠다.

그리고이들이組織發表한閣僚名單에는軍務總長李東輝,參謀總長柳東說,媾和大使金圭植등을擔任發表하고있는것도주목된다. 당시「불라디보스톡」에駐屯하던日軍의報告에依하면그방면의獨立運動主動者에는美國의援助와世界大勢에依해獨立을달성할수있다고하는辰와獨立運動을通하여韓民族의自由를獲得코자하는派의두勢力이있었다고한다.⁽⁷⁾그리고大韓國民議會는당시露滿國境地帶에서本國進攻을위해義勇軍을조직하고

복되고있음이주목된다.이는당시韓國社會에서獨立闘爭의名士들이공통적으로지목되어있었던관계로이들을망라한테서기인한다고본다.

(4)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朝鮮民族運動年鑑』p.188 3月17日條 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編『明治百年史叢書』原書房 昭和42年。朴殷植,上掲書p.105「獨立」第5號4面 獨立運動史闡

(5)愛國同志援護會編,『韓國獨立運動史』,1956, p. 389. 同中大總會를國民議會로改稱했다고있다.

(6)김원홍著『在美韓人五十年史』pp. 451—2

(7)浦灘辰遣軍參謀長『浦灘方面ニ於ケル排日鮮人ニ關スル件通牒』金正明編『前掲書』III p.444.

있던 舊韓國陸軍參領 李東輝의 後援會 같은 印象의 組織이었다고 하며⁽⁸⁾ 實제로 獨立軍組織을 위한 朝鮮運動等의 活動을 했지만 구체적인 行政府組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흔적은 없었으며 後述하는 바와 같이 同年 9月 李東輝가 上海로 統合臨時政府의 國務總理에 就任해 감과 同時에 上海政府에 吸收되는 것이다.

그리고 三.一運動 이전에 國外로 亡命한 志士들이 가장 많이 集結해 있었고 日帝의 司法權이 미치지 못하여 그들의 往來가 많았던 곳이 上海였던 만큼 三.一運動이 일어남과 동시에 各地의 志士들과 國內로 부터의 亡命人士들은 속속 上海로 모여 들었으며 마침 第一次世界大戰이 終局에 임할 무렵에 「월슨」 大統領의 特使가 上海에 도래하여 弱少民族의 解放을 勸告하자 이곳에서 獨立運動은 活氣를 띠우게 이르렀다.⁽⁹⁾ 그리하여 1919年 2月 8日 드디어 東京留學生⁵ 獨立宣言과 이 消息이 上海에 傳해지자 이들의 活動은 아연 활발해져서 이미 3月下旬에 上海 佛租界에 「獨立臨時事務所」를 두고⁽¹⁰⁾ 各國公館과 新聞, 通信機關에 國內의 獨立運動狀況을 알리는 등 活動을 展開했고 서울에서 李鳳洙가 파견되어⁽¹¹⁾ 臨時政府組織의 일을 相議⁶ 옴과 同時に 露領과 滿洲에서 李東寧, 李始榮등 30餘名의 人士들이 來着하였다. 4月 8日에는 다시 서울 獨立團本部에서 姜大鉉이 파견되어 李東輝를 執政官으로 하는 閣僚名簿⁷· 臨時政府憲法原文을 가져와 이들을 당황케 하였다.

드디어 이들은 4月 11日 孫貞道, 李光洙의 제의로 各地方代表會議를 열고 숙의끝에 臨時議政院(議會)를 구성하여 의장에 李東寧을 選出하고 臨時憲章(憲法) 10個條를 제정공포하고 國號는 大韓民國으로하고 官制을 決定하고 서울 閣僚名簿草案을 참작하여 李承晚을 國務總理로 하는 内閣을 組織하였으며 同 13日에는 內外에 政府成立을 宣布하였다.⁽¹²⁾

(8) 金正明編 前揭書 III p. 876 朝鮮總督府拓殖局「韓人排日團體調」

(9) 朴泰植의 前揭書 p. 109와 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前揭書 p. 190 4月 13日條에는 당시 集結人數가 1000餘名이라 했으며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呂運亨調書)에는 처음 약 400명이었는데 1919年 가을에는 700여명으로 증가되었다고 했다.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3編 p. 3에 依하면 「民衆自決主義의 提唱은 國外在住의 朝鮮人에 대하여도 異常한 衝動을 주었다. 上海에서는 休戰條約締結當時이미 數百名이 結集했으나 Wilson 大統領의 使者 「크레인」이 1918年 11月末 上海에 도래하여 中國政府에 對하여 장차 열릴 講和會議에서는 특히 弱少民族에 대한 解放을 도모하기에 絶好의 機會임으로 代表를 파견함이 좋을 것이라는 연설을 하여 때마침 그곳에 왔던 朝鮮青年黨員 呂運亨은 크게 감명하여 곧 張德秀등과 講和會議에 民族解放을 호소할 대표 파장을 모의하고 同志糾合과 資金調達 등에 분방하였다. 1919年 1月에는 金泰植을 파리로 보내고 張德秀를 國내로 呂運亨을 露西亞 그리고 西北開島, 美州, 하와이에도 연락을 취하여 宗敎界 및 各界에 獨立運動展開를 호소하였다.」

(10) 그 住所는 政治的 自由를 傳統的 信條로하는 佛租界 賓昌路 329號로서 上海의 新韓青年團人士가 그心이 된 것으로 玄楯이 總務를 맡아보았는데 그는 國內에서 三.一運動의 謀議에 參加했던 牧師로서 海外宣傳을 맡은 基督敎側에서 上海로 派遣되어 왔었다.

(11) 朴泰植, 前揭書 p. 109 「適自京城獨立團本部派遣 李鳳洙 議以臨時政府之必要」 그리고 前記한 上海의 新韓青年團은 파리講和會議와 월슨 大統領에게 보낼 請願書의 名義를 위해 呂運亨, 張德秀, 趙東祐, 鮑于禡, 金澈, 韓貞敎등이 會員 3.40名을 모집하여 「더키」青年黨을 모방하여 急造한 것이다. 李萬珪, 呂運亨先生闡爭史 1946. pp. 22-23

(12) 金正明編 II. 朝鮮獨立運動, 前揭書 pp 3.4. 188-189

이리하여 7월의 大韓民國臨時政府는 마침내 수립되었다. 뒤이어 同 13日에는 安承源 金九 등이 本國에 내도하는 등各地에서 志士들이 모여 獨立運動者數는 1,000 餘名에 달했으며 이어 議政院法을 制定하여 議員을 地方會에서 選舉하도록 해서 國內 8道, 露領, 中華領, 美國領등 11地方으로 區分하여 地方選舉會에서 議員을 選出하고 孫貞道가 議長으로 뽑히었다.⁽¹³⁾

이렇게 制定된 臨時憲章은 國號는 大韓民國이요, 3.1運動에 言及한 前文과⁽¹⁴⁾ 本文 10個條로 構成된 것으로 民主主義 原理에 입각한 한국 最初의 基本法이 있다. 趙素昂이 起草한 이 臨時憲章의 内容은 A.1 民主共和制 채택, A.2 臨時政府(行政府)와 臨時議政院으로 統治, A.3 特權階級의 否認 즉 男女貴賤 및 貧富의 階級 없이 人民의 一切平等, A.4 諸基本權, A.5 選舉權 및 被選舉權, A.6 教育, 納稅 및 兵役의 義務, A.7 神意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고 人類文化 及 平和에 공헌하기 위하여 國際聯盟에의 加入, A.8 舊皇室優待, A.9 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 全廢, A.9 國土恢復 후 1年內의 國會召集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즉 「上海臨時政府」이고 1名「上海假政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國體와 政體를 民主共和制를 채택한 것은 10年前에 主權을 잃은 大韓帝國의 그것에 비하면 隔世의 差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 憲章의 制定過程에서는 가령 舊皇室待遇문제, 政府組織문제 및 國號문제등에 있어 制憲議員들간의 치열한 論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¹⁵⁾當時의 이들의 政治意識의 内容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如何間에 이 政府는 허다한 가시밭길을 경유하여 1915년 大韓民國 27年的 年號를 가지고 還國할 때까지 나라잃은 韓民族을 代表하는 正統政府로서 獨立運動을 지도해 온 것이다.

이처럼 露頭「블라디보스톡」과 上海에서 臨時政府가 組織되는 동안 「紙上政府」의 性格으로서 「朝鮮民國臨時政府」와 「新韓民國政府」가 樹立 發表되었고 아울러 서울에서는 三·一運動 講義에 參加했던 一部 人士들이 主動이 되어 基督教, 天道教, 佛教, 儒教등 各界를 망라하는 形式으로 所謂「漢城臨時政府」가 樹立되었다.

「朝鮮民國臨時政府」는 同年 4月 9일에 僂警이 서울에서 發見한 그들의 소위 不穩文書로서 布告文과 政府創立章程 33個條(朝鮮國民大會와 朝鮮自主黨의 聯合會名儀) 및 都領府令(大統領今에 해 當) 第一號로 各部務卿을 임명하고 同第二號로서 萬國國際聯盟會議에 外交委員으로서 李承晚과 閣賓鑄를 치정하고 있으며(이상 모두 朝鮮民國元年 4月 10日字) 이 文書에 出연된 人物들은 天道教徒 및 醫師들로서 그 閣僚構成은 正都領 孫秉熙, 副都領 李承晚등으로

朴殷相, 韓國獨立運動之血史, 前揭書, pp. 108~109

附錄 第1回 臨時議政院會議開會, 大韓民國臨時憲章宣布文, 大韓民國臨時憲章, 宣誓文, 政綱 參照.

(13) 金正日, 前揭書 pp. 190~191

附錄 也方選舉會選出議員

(14) 3.1運動이 「神人一致中外協議」하여 일어난 것이며 「以來 30有日間에 平和的 獨立을 300餘州에 光復」이라고 宣言했다.

(15) 呂運弘著, 夢陽 呂運亨, 1967. pp. 40~2

되어 있는 것이다.⁽¹⁶⁾

그리고 또 하나의 紙上政府인 「新韓民國政府」도 그들의 不穩文書로서 4月 17日 鐵山, 宜川 義川地方에서 발견된 「朝鮮獨立團」名義의 「新韓民國政府宣言書」에서 政府樹立宣言과 約法 7箇條(不補)를 宣言發布한다는 文書에 아울러 執政官 李東輝등의 閣僚名單이 署名되어 있는 것이다(註 3 參照). 同宣言書中の 6個項의 經濟的 公約은 納稅의 拒否, 預金의 引出, 鐵道運搬貨物의 滯積, 印紙貼用의 拒否, 民事裁判의 留案, 日本物品의 不使用 등 非協調運動을 提唱하고 있는 點이 뒤의 4月 23日字 漢城國民大會決議에서 나타난 納稅拒否等 非協調運動과 一脈相通且 類似한 것으로서 注目된다.⁽¹⁷⁾ 이상 두개의 「紙上政府」에 관해서는 자세한 資料가 없어.] 이상 確認하기 곤란하나 대체로 그 樹立節次가 비교적 극소수인에 依한 것으로 추측되며 각 政府의 閣僚構成에 있어 중복된 점이 많은 것은當時 獨立運動의 志士들이 國内外에 널리 알려져 지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음 「漢城臨時政府」는 上海에서 臨時政府樹立이 宣布된지 12일만인 4月 23日에 서울에서 小規模의 學生示威와 함께 曺晚植, 李容珪등 13道代表 24名으로 組織된 國民大會名義로 李承晚을 執政官總裁로 하는 臨時政府 形式으로 그 樹立이 宣布되었고 이 사실은 世界的通信機關의 聯合通信(UP)을 통해 海外로 널리 紹介되었으며⁽¹⁸⁾ 또 臨時政府樹立에 관해서 서울의 獨立團本部로부터 上海에 李鳳洙가 파견되어 相互連絡이 당아 있음은前述한 바와 같다. 이것이 이른바 漢城政府로서 그 準備過程에서부터 地下組織이었던 만큼 그 成立節次의 전모를 알리는 記錄이 드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斷片的인 記錄들도 符合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上海佛租界 大韓僑民團事務所에서 抑收된 「朝鮮民族運動年鑑」에 나타난 4月 23日條의 記錄內容에 依하면 漢城國民大會決議事項으로서

(一) 出席 13道代表氏名

(二) 決議事項

(1) 臨時政府組織件 (2) 日本政府에 向하여 對韓統治權의 撤去와 軍備撤退要求權 (3) 巴里講和會議에 出席할 人員選定의 件 (4) 朝鮮人은 日本官廳에 各種納稅를 거절할 것 (5) 一般人民은 日本官廳에 對하여 一切의 請願及 訴訟行爲를 하지 않을 것.

(三) 幹部選定(前述註 3 參照)

(16) 洪淳鉉, 上海臨時政府의 正統化過程, 前揭論文, p. 322 註 3参考

(17) 金正明, 前揭書 pp. 22, 193. みずす書房刊 朝鮮(二) 三.一運動(二) 現代史資料(26) p. 70

(18) 漢城國民大會 및 政府樹立經緯에 關해서는 記錄이 稀費하나 大體로 알려진 바로는 「4月 22日 京坊瑞麟閣, 奉春館(中華料理業)에서 國民大會를 개최하여 臨時政府樹立과 그에 따르는 決議와 誓言등을 하고 한편 동시에 거리에서는 學生 3,000 名과 勞動者 3,000名으로 示威케하고 市내에는 自動車 3臺로 비라를 뿌리게 計劃하였던 것이 一部學生만 23日 鐘路등에서 示威했으나 대북문의 계획은 舉事直前에 밟각되어 未遂가된 듯하다. 그러나 韓南洙, 李奎甲, 李東郁, 玄錫七等 協議下에 작성된(李東郁執筆) 國民大會의 趣旨書와 13道代表者名單 臨時政府組織 約法 및 宣布文등의 文案이 전후 近萬枚가 인쇄되어 그것이 「聯合通信」(UP) 記者에게入手되어 世界的으로 보도된 듯하다」 洪淳鉉, 前揭論文 p. 333 參照

(四) 巴里講和會議에 參席한 國民代表委員 李承晚, 閔瓚鎬, 安昌浩, 朴容萬, 李東輝, 金奎植
盧伯麟,

(五) 約法 A.1 國體는 民主制를 採用

A.2 政體는 代議制를 採用. A.3 國是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尊重 및 世界平和에의 貢獻 A.4 臨時政府의 權限은 一切의 內政과 一切의 外交 A.5. 國民의 義務는 納稅와 兵役 A.6 本約法은 正式國會가 召集하여 憲法을 領布할 때까지 適用한다.

(六) 一般民衆의 遵守要件 爲國戰死, 同族相救, 仁義制暴, 政府服從, 合心合力, 主權尊崇財政義務

(七) 北美合衆國內臨時事務所位置 : The Portland 14 St., Vermont Ave., Washington D.C., U.S.A. 等이다.

이것을 보면 5개項의 決議事項은 巴리講和會議에의 代表派遣과 함께 日本官廳에 대해 各種 納稅를 拒絕할 것과 請願 및 訴訟行爲를 하지 말 것을 非協調運動을 提唱하고 있는데 이는 國內外의 可能한 最大限의 抵抗運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6個條로 된 約法은 上海臨時政府의 臨時憲章에 비해 基本法으로 未備點이 많다. 우선 國體는 民主制, 政體는 代議制라는 表現부터 어색하다. 또 國民의 基本權에 關해서도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尊重하는 것이 國是라고 규정했지만 그 自由와 權利의 内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權力構造에 있어서는 上海臨時政府가 總理制인데 執政官總裁制를 채택하고 그 외의 多數의 評政官(諮詢的役割)을 두고 있음⁽¹⁹⁾ 議會가 이후에도 구성된 흔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一切의 內政 + 外交의 權限을 臨時政府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나서(A.4) 正式國會가 召集되어 憲法을 制定하기까지 本約法을 適用한다 하여(A.6) 約法과 同時に 發表한 內閣에게 國政의一切를 委任한 셈이며 이후 國民大會가 召集된 일이 없기 때문에 理論上 1918年 制憲國會가 憲法을 制定하기까지 李承晚 執政官總裁에게 全權을 一任한 形式이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在美한 李承晚은 이미 上海臨時政府의 總理로 選任된 바 있지만 이 漢城政府樹立의 消息을 듣자 5月에 곧 워싱턴에 「執政官總裁事務所」를 設置했고 8月 23일에는 또「韓國委員部」(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를 설치 했다가 9月에는 「歐美委員部」로 개칭하였다. 이는 欧美地域 우리 僑胞에 대한 政府의 行政機關이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外交을 담당

(19) 漢城 政府는 閣僚名單과 함께 18名의 評政官名單을 選任發表했는데 評定官의 職務가 뚜렷이며 內閣 +의 關係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言及도 없어 그 性格을 알 수 없지만, 당장 政府樹立에 宣布가 急先務였던 당시의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이는 議會의 성격을 띠었다기 보다는 執政官總裁 또는 內閣의 諮問機關으로 構想된 것인 듯하다. (1919年 8月 第1次 改憲이 끝나자 安昌浩는 「儒教나 佛教나 天道教나 民間이나 有力한 人物로 構成되는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 評政院構成을 提案하고 있는데 이는 漢城政府의 評政官制에서 着眼한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朱耀翰編, 安鷗山全書, 1963 所收 p.543 臨時議政院會議錄) 그 構成은 趙琬九, 朴殷植, 玄尚璉, 韓南洙, 孫晉衡, 申采浩, 鄭良弼, 玄植, 孫貞道, 鄭鉉湜, 金晉鏞, 曹成煥, 李奎豐, 朴景直, 朴瓚翊, 李範允, 李奎甲, 尹解 등이었다(前揭 朝鮮民族運動年鑑 p.193)

하였다.⁽²⁰⁾

이 歐美委員部는 오햅동안 漢城政府의 남은 유일한 牙城的 政府機關이었다. 李承晚박사가 뒤에 上海臨時政府의 臨時憲法改定에 의한 統合政府의 大統領에 就任을 承認한 후에도 內閣과의 意見對立이 생길 때면 이 漢城政府 約法 第6條 規定을 들어 自身의 正統性을 主張하였으며 그것이 民國 7年(1925年) 3月 13일에 마침내 그에 對한 彈劾의 中요한 理由가 되기도 했는데⁽²¹⁾ 그의 이러한 漢城政府 正統論은 解放 후 歸國한 뒤에까지 계속되었다.⁽²²⁾

이상 論及한 5個의 臨時革命政府中 2個의 紙上政府를 제외하고 나머지 露領의 國民議會와 上海 大韓國臨時政府 및 漢城臨時政府 등 3個의 臨時革命政府는 興奮된 狀況아래 3個處에서 거의 同時에樹立되었고 우선 獨立運動을 指導할 最高機關을 組織해 놓고 闘爭해보자는 생각이支配的이었기 때문에 決議된 憲章등이 略式이거나 矛盾된 内容도 적지 않았으나 이는 부록이 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 갈래의 臨時政府와 性格은 각각 그 推進人士들의 政治的 主張과 思想的 背景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共通的 特徵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臨時政府의 人的構成에 있어 主導的인 政治勢力이나 階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또 政治的 背景이나 現地居住 혹은 本人의 意思與否조차 가리지 않고 오로지 當時 國內外에서 國民들에게 人望이 높고 獨立運動에 가담했던 著名人士중에서 名聲本位로 각기 人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뒤에 獨立運動過程에서 그들 閣員사이에 不睦과 指導體系에 混線을 드려냈던 것이다.⁽²³⁾ 이중에서도 특히 李承晚의 聲價는 壓倒的이었고 이들 세 政府에서 각기

(20) 「在美華人五十年史」 p. 376, 그 活動狀況은 pp. 394~6 參照. 그리고 그 住所는 처음에「필라델피아 웨이드빌딩 825」였다가 後에「와싱톤 콘티넨탈 빌딩 908」로 옮겼다.

(21) 1925年 3月 13日 그의 彈劾理由의 하나가 된 「臨時憲法 및 臨時議政院否認」의 증거로 채택된 그가 1924年 12月 21日付 國務員各位로 보낸 回覽公文內容에 依하면 「議政院에 있어서 如何한 法律로서 如何한 議案을 通過시키더라도吾人은 모두 臨時의 便宜로서 放任할 것이다」나 13道代表가 國民大會라하여 漢城에 모여 宣布한 約法第6條에 「本約法은 正式國會를 召集하여 憲法을 領布하기까지는 이를 適用한다」고 한 法文에違反되는 行爲를 하여 漢城組織의 系統을 保持치 못하는 경우에는 결코 이를 遵守할 수 없음」이라 하였다. (前揭「民族運動年鑑」p. 314. 3月 11日條參照) 이같은 漢城國民大會가 제정한 約法 第4條에 依한 「一切의 內政과 外政」을行使하여 上海臨時政府의 議政院까지도 制約하는 論理를 펴고 있었던 것이다.

(22) 1948年 2月 27일에 發表한 三一節記念談話에서 李承晚은 「이번 總選舉로서 세우는 政府는 己未年 漢城에서 세운 臨時政府의 繼承으로 統一的 國權을 回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梁又正編著, 李承晚大統領獨立路線의 勝利, 1948. p. 215 參照)

(23) 東京留學生들의 獨立宣言文을 비롯한 많은 言文과 漢文들에 나타나 있는 思想이 그려졌고 33人指掌者, 가령 上海臨時政府의 行政府要員構成의 例를 들어 보더라도 露領, 中國, 美洲등에 산재한는 독립운동의 領袖들을 각부장관으로 안배 추대하여 정부각료가 李始榮외에는 당시 現地에 駐留하고 있지 않아 각부 次官들을 現地체류자가 맡아 次長政治制가 채택되었다가 곧이어 4月 13日 각부 위원제로 바꾸어 8月 5日 次長制가 부활될 때까지 集團指導制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서울의 漢城政府의 閣僚와 評政官構成에 있어서도 現地 사람들은 거의 하나도 없는 推載人士이었다. 이하하여 在美中인 上海政府의 首班인 國務總理 李承晚은 또다시 漢城政府에서 執政官總裁로 任命되어 法統問題로 후일의 혼선을 빚게된 일조차 있었다.

實質上의 政府首班으로 추대되고 있다.

둘째로 民主主義理念이 이미一般的 時代思潮가 되고 있었음으로 不完全하게 나마 어느臨時政府이고 한결같이 民主主義를 표방하였다.⁽²⁴⁾ 물론 悲運의 王朝에 對한 感傷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에 謀議過程에서 일부에서는 王政의 復舊 혹은 大韓의 復活論이 대두 하기도하고 또 忠心糾合을 위하여 舊皇室을 優待하자는 主張도 있었지만 이무렵 모든臨時政府가 그組織原理로서 民主主義를 宣言하고 民主共和制를 採擇한 것은 이것을 大韓帝國에 비하면 革命的의 하겠으며 獨立革命의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 세臨時政府는 모두 파리講和會議에 대해 크나큰期待를 걸고 있었다. 즉 上海臨時政府는 이미 2月에 新韓青年團代表로 파리에 派遣된 金奎植에게 外務總長兼 全權大使의 信任狀과 運動費를 보냈고 露領 國民議會도 2名의 僑民代表를 派遣했으며 서울의 國民大會도 1名承晚등 數名의 巨物級 人士들을 國民代表委員으로 派遣할 것을 決議했다. 또한 露領의 國民議會의 決議案과 上海臨時政府의 臨時憲章에는 國際聯盟에 加入할 것도 主張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期待 또는 決議에도 不拘하고 이를 國際機構는 弱小國獨立問題 處理에 있어 시등 無誠意였고 幻滅만을 안겨준 것이다.

3. 「大統領制로의 諸政府統合一第1次改憲

이와같이相互連絡不便으로나마複數의 臨時政府가 存在한다는 것은 正統化에 矛盾이며, 實際로 朝日鬪爭指導의 分裂 내지 混線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對外적으로 全民族의 政治的統一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의심을 받게 될것임으로 당연히 早晚間に 그 統合 一元화가 促求되었던 것이다.

이의 臨時政府統合作業은 일찌기 海外各地의 僑胞를 망라하여 獨立運動을 촉진하고자 美洲에서 蓬起되었던 大韓國民會(中央總會長—安昌浩)의 遼東地方派遺員으로서 安昌浩⁽²⁵⁾가 4月 5日 陞發하여 도중에서 5月 25日 上海에 到着하여 上海政府의 第二席 内務總長(國務總理李承晚은 美國「워싱턴」에 체재함으로 總理代理가 되는 것임)으로 임명된 것을 알고 처음에는 취임을 주저하다가 결국 6月 28일에 正式 就任하면서 부터 그에 의해 적극적으로 具體化되고 推進된 것이다.

上海에 들른 安昌浩는 처음 政府보다는 獨立黨을 결성할 것을 구상했었지만 이미 臨時政府樹立로 宣布된 뒤였기 때문에 그 統合作業에 나선 것이다. 그가 上海에 도착하기에 앞서

(24) 東京留學生들의 獨立宣言文을 비롯한 많은 宣言文과 檢文들에 나타나있는 思想이 그러했고 33人指導者들의 法廷陳述에서도 獨立후의 政體에 대해 한결같이 「民主政體」를 念願했으며 이밖에도 漢城政府樹立의 宣布와 함께 있었던 示威行進의 「플래카드」가 「共和萬歲」였다.

(25) 安昌浩는 合併直前에 美國으로 亡命하여 그곳의 僑胞들을 지도結束시키는데 努力하고 「大韓國民會」「興士團」등을 組織하여 獨立을 위한 實力培養에 큰 成果를 거두었다. 大韓國民會는 3월 10일에 약 本國의 3.1運動消息을 전해듣고 3月 15일에 美洲, 하와이, 멕시코, 在留同胞全體代表會를 열어 「臨時政府樹立에의 奉任」을 使命으로 獨立運動의 촉진차 각지에 대표를 파견하게 된 것임(김원용, 재미한인 오십년사, 1957. p364)

이미 露領의 國民議會는 元世勳을 通하여 上海政府와의 統合을 교섭하여 왔으며 上海 議政院에서는 상-하 유연한 타협책이 여러번 강구된 바 있었다. 마침 上海에 到着한 安昌浩는 이 움직임을 포착하여 우선 이 두개 政府의 統合運動을 促進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²⁶⁾

즉 上海政府는 4月 13日에 內外에 政府成立을 宣言하였는데 同月 15일에는 露領代表 元世勳이가 國民議會와 議政院(上海)을 병합하고 政府는 露領에 옮기자고 제안하여 왔으며⁽²⁷⁾ 上海臨時政府의 承認문제를 討議한 4月 29일의 國民會議는 「假承認」을 하고 同政府가 露領으로 移轉한 뒤에 行動統一을 하기로 決議하였다.⁽²⁸⁾ 한편 議政院에서는 5月 13日 第四回 議政院議會에서 「名地에 散在한 각議會를 統一할 것」을 決議한 바 있으며⁽²⁹⁾ 6月 28일에 安昌浩가 內務總長兼 國務總理代理로 就任한 후인 7月 11日 第五回 議政院會議 第五日에 政府側 提議로 가결되 사항이라하여

- ① 臨時政府의 위치는 上海에 둠. 단 政府의 意思 및 上海居留民의 여론에 따라 隨時自由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② 臨時議院 및 露領國民會議를 合併하여 議會를 組織할 것. 단 露領側에서 이 議會의 위치를 露領으로 할 것을 絶對主張할 때는 이를 許可(단 議院組織에 있어서 露領에서는 6人以内의 議員을 選出할 것)⁽³⁰⁾

등으로 되어 있으니 國民會議側 統合要求에 對하여 上海측에서 상당히妥協的으로 응할 것에 上海政府와 議政院이 완전히 합의를 본 것이다.

이렇듯 上海政府와 露領國民會議의 統合交涉은 그 두렵까지 前者は 議會萬能이었고 후자에게 行政府의 組織이 있었으므로 實際로는 兩議會의 合併形式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漢城政府의樹立이 발표되자 비록 이 政府는 議會가 없었고 議政院과 行政府를 갖춘 上海政府에 비하여 弊勢하고 짹이 없었으나 5月부터 「와싱턴」에 執政官總裁事務所를 設置하고 대국기도 달고, 僑民들 사이에는 執政官總裁로, 그리고 對外의으로는 「푸레지멘트」로 행세하고 있는 李承晚과 結合되지 않는 臨時政府統合은 無意味한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漢城政府는 祖國首都에서 31人の 後繼라고 하는 13道代表로 構成된 國民大會의 名義로 指定된 政府인 만큼 理論上으로도 누구나 그 正統性을 否認할 수 없었고 在美同胞 안에도 漢城政府의 神聖을固執하는 傾向이 있었던 만큼⁽³¹⁾ 이 漱城政府와 統合하지 않고서는 上海臨時政府의 正統化

(26) 그는 獨立運動의 統一 및 永續實遂의 길을 구상한 끝에 ①各地方의 獨立運動의 領袖들을 上海로 모기도록 적극 推進한다. ②領袖들이 上海로 모이는대로 자기는 물리가고 다른 人士를 추대하는 條件으로 內務總長兼 國務總理代理의 重職에 就任한 것이다.(安島山全書 上篇第9章「臨時政府時節」其一)

(27) 金正明, 前揭書 II. 「朝鮮民族獨立年鑑」1919年 4月 15日條 p. 191

(28) 金正明著, 前揭書 III p. 437

(29) 金正明, 前揭書 II 同日條 p. 196

(30) , II 同日條 p. 199

(31) 在美韓人 50年史 pp. 484-5

를 期待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하여 上海政街에서는 名地의 要請에 따라 安昌浩를 中心으로 統合의 方案이 模索되던 차에 國務會議의 議決만 거치고 臨時議政院의 決議는 없었던 다음과 같은妥協案이 나왔다.

決議事項

1. 上海와 俄領에서 設立한 政府를一切解消하고 오직 國내에서 13道代表가 創設한 漢城 政府를 繼承할 것이니 國내의 13道代表가 民族全體의 代表인 것을 認定함이다.
2. 政府의 位置는 아직 上海에 둘 것이니 各地의 連絡이 比較的 便利한 까닭이다.
3. 上海에서 設立한 政府의 制度와 人選을 解消한 후에 漢城政府의 執政官總裁制度와 그 人選을 採用하여 上海에서 政府樹立以來에 實施한 行政은 그대로 有效를 認定할 것이다.
4. 政府의 名稱은 大韓民國臨時政府라 할 것이니 獨立宣言以後에 各地를 圓滿히 代表하여 署立된 政府의 歷史的事實을 살리기 위함이다.
5. 現任政府閣員은 一切히 退職하고 漢城政府가 選擇한 閣員들이 政府를 引繼할 것이다⁽³²⁾

以上의 決議事項은 露領臨時政府에도 該當되는 것으로 現實的으로 李承晚의 「푸레자던드」稱號를 合法化시키는 政府統合方法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安昌浩 總理代理는 우선 露領臨時政府側을 설득하고자 內務次長 玄樞과 金聖謙을 露領으로 特派하여 露領의 實力者인 李東輝에게 前記한 決議의 趣旨도 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政府의 公翰을 傳達하고 그를 설득하여 結局 國民議會를 解散시켜 이를 吸收 統合하는데 合議를 보고⁽³³⁾ 李東輝마저 統合政府의 國務總理로 就任하기 위해서 上海로 모셔오는데(9月 18日) 성공하였다. 나머지 문제는 漢城政府와의 통합 문제였다.

玄樞의招待로 李東輝가 同途 上海에 到着한 9月 18일에는 이미 上海政府와 漢城政府사이에 前記한 決議趣旨에 立脚한 統合作業이 技術的으로 進行되어 결국 上海政府를 漢城政府의 法統을 繼承하는 형식으로 改造하고 또 上海臨時議政院이 露領의 國民議會와 合同하는 節次를 踏아 統合을 끝낸 후였다. 그것이 곧 第一次臨時憲法改定(1919年 9月 11日 民國元年公布)이다.

上海臨時政府의 提案으로 臨時憲法改訂案과 臨時政府改造案이 第3回(通番第 6回)臨時議政院會議(8月 18日—9月 17日)第 10回인 8月 28일에 上程되어 9月 6일 滿場一致로 通過되었다. 이 회 議政院議長은 孫貞道, 國務總理代理는 安昌浩 內務總長이었으며 即日로 大統領選舉에 들어가 李承晚을 反對無 滿場一致로 選出함으로써 마침내 9月 11일 新憲法은 공포되어 待

(32) 在美韓人 50年史 p 458, 先耀翰編, 安島山全書 1963 所收 p211.

(33) 國民議會의 解散日字는 未詳이나 大韓人國民會 特派員으로當時 「불리나보스록」에 있던 李剛의 다음 記錄으로 당시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國民議會議員大會가 열리는 날 나도 그 議員의 한 사람으로 두분(玄樞, 金聖謙)과 같이 잤더니…… 그리고 議事が 進行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날 저녁으로 國民議會가 取消되었다. 條件은 國民議會·議員 5분지 4가 上海臨時議政院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李東輝씨가 찬성하니가 滿場一致로 國民議會가 取消되었다(先耀翰編, 安島山全書 1963 所收 p214 臨時議政院會議錄), 또한 朴賢煥著, 繢篇 島山安昌浩 pp 164—166 參照.

望의 統合作業을 成就했다. 뒤이어 國務總理 李東輝를 비롯한 名總長들이 속속 赴任해 옴으로써⁽³⁴⁾ 名實共彰 統一政府가 形成된 것이다.

이 改憲內容의 주요 골자는 行政各部를 漢城政府式으로 구성하되 執政官總裁만 大統領으로 그 名稱을 바꾸는 同時에 大統領은 議政院에서 뽑고 國務員은 大統領이 任命하며 主權의行使를 大統領에게 委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臨時政府改造案」의 骨字는 既往의 6 部를 漢城政府의 7 部 局으로 고치고(但 執政官總裁를 大統領으로 改稱) 任命도 漢城政府名單대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즉 上海政府(露領國民議會와 함께)를 없애고 漢城政府를 繼承할 것과 李承晚을 大統領으로 또 漢城政府의 閣員들이 政府를 引繼하는 技術的 方法을 취한 것이다.

總理代理 安昌浩는 그 提案演說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全民族의 政治的 統一을 內와 外에 な하고자 함이라” “二者의 一을 取한다면 우리 國土의 首府에서 組織된 政府를 承認함이 또한 意味있는 일이다. 或은 兩者를 共히 버리고 統一의 新政府를 組織함을 말하나 이는 다민 또 一個의 政府를 만들어 三個의 政府의 存在를 의심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不過하라”고 說明하고 끝으로 政府改造후에는 上海서는 7人の 閣僚를 잃되 5人을獲得한다고 上海側의 利害關係를 提示하였다.⁽³⁵⁾

閣僚人事問題는 사실상 上海政府閣僚는 財務總長 崔在寧 以外에는 모두 漢城政府閣僚로 임명되어 있음으로 上海政府에서는 崔在寧一人을 잃되 朴容萬, 李東寧, 盧伯麟, 申圭植, 李始榮등 5人을 더 얻는 利點도 있었다.

이러한 政治의 必要에서 改定된 大韓民國臨時憲法은 前文과 8章 58個條의 近代憲法의體制를 갖춘 드물당한 것이었으며 獨立運動創業期의 부푼 理想과 大經倫을 풀고루 表現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험난한 獨立運動의 實情에 맞도록 몇 차례 改定되어 光復에 이르는 동안에 점차 制略함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臨時憲法은 既存의 臨時憲章의 改定이 차기 보다 實質적으로는 그 前文의 표현대로 곧 制定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前文은 이미 선언한 獨立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三.一 獨立宣言文의 序頭를 그대로

(34) 9月 18日 新總理 李東輝가 露領으로부터 上海에 到着한때 뒤이어 10月 下旬에는 文昌範(交通總長), 10月 27일에는 李東寧(內務總長) 李始榮(財務總長)도 上海로 왔고 朴容萬(外務總長), 盧伯麟(軍務總長)도 곧 온다는 消息이 있었다. 그리고 安昌浩(勞動局總辨)은 물론 4月부터 上海에 와 있어 이로서 國務總理이 10月 28일에 最初로 會合했으며 11月 4일에는 第1次 國務會議를 空前의 盛況裡에 開會함으로서 統一大韓民國政府의 發足을 具現한 것이다. 事情에 由하여 新閣僚中에 여기 參席치 못한 자는 在美한 新任 大統領 李承晚 및 金奎植(學務總長)과 申圭植(法務總長)등 만이었다. 그리고 李承晚大統領은 1920年(民國2年) 12月 5일 上海에 到着하여 大統領으로서 한때 執務하다가 (6個月間) 國務院에 맡기고 太平洋 會議에 대비로 차를 翳는 6月에 다시 渡美하였다.

(35) 洪淳鉉, 上海臨時政府의 正統化過程」新東亞 1968年 3月 pp 1319~43 參照.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三所收臨時議政院關係資料參照. 孫世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臨時憲法改定過程을 中心으로,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叢, 東亞日報社, 所收 pp.914~915,

그序頭⁽³⁶⁾에引用한 다음 10개조의臨時憲章을基本으로하여 이臨時憲法을制定한다고했고本文 58條의構成은第一章 縱領(A.1—A.7), 第2章 人民의 權利義務(A.8—A.10) 第3章 臨時大統領(A.11—A.17) 第4章 臨時議政院(A.18—A.34), 第5章 國務院(A.35—A.41), 第6章 法院(A.42—A.47), 第7章 財政(A.48—A.54) 및 第8章 部則(A.55—A.58)으로되어 있다.⁽³⁶⁾

이改憲의동기가諸臨時政府의統合一元化이었고 그技術的便法으로서 이미李承晚이內外에對하여자칭해온大統領稱號를合法화시키기위한것이기때문에이統合憲法에서政府形態는부득이大統領制를採用하게된것이지만그具體的內容에있어서는國務院責任制의要素를많이加味하고있고다음과같은주요특징을가지고있다.

즉大韓民國의主權行使는憲法範圍내에서臨時大統領에게全任하되(A.6)三權分立과그종行政權은大統領이아닌國務院에게귀속되어있다(A.5).그리고臨時大統領은國家를代表하고政務를總攬한다(A.11)고規定하고있으나이른바行政權을행사하는國務院과는遊離되 있는것이다.

즉國務院은國務員으로組織하여行政事務를一切處理하고其責任을진다(A.35)고하였고國務員이란國務總理와各部總長과勞動局總辦을말하며이들은臨時大統領을보좌하여主管行政事務를執行한다(A.37)고하였을뿐臨時大統領은國務院組織에明文의規定이없다.⁽³⁷⁾

또國務員의任命은大統領이하지만臨時議政院의同意를얻어야하며(A.15—A.21)臨時議政院은臨時大統領이나國務員을彈劾할수있게했고한편臨時大統領은臨時議政院에서選舉되 특히任期의규정이없으며大統領으로서그의主要職權行使에있어서는臨時議政院의決議또는同意를要하게하고(A.15)國務員은臨時大統領이法律案을提出하거나法律을公布하거나或은命令을發布할時候에반드시副署하도록한(A.39)點등에비추어內閣責任制的性格을강하게띄우고있는것이다.⁽³⁸⁾

그리고臨時政府로서는그大統領이되도록臨時政府所在地인上海에서執務하기를希望한示唆가있으나(A.16)실제로李承晚臨時大統領은在任6年間(1919—25)上海에는6個月(1920年12月—1921年6月)만체류했을뿐歐美外交의重要性을理由로美國에駐在하면서遼東의政府는自己의決裁를받아國務院에맡기고美洲地域의政務는大統領自身이맡

(36)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 前揭書pp. 934—942出典(獨立)1919年9月16日字(第9號3.8面)但獨立紙에는章名縱領이빠져있고第7條다음에「第二章人民의 權利義務」라는章題分이쓰여있다.洪淳鉅新東亞1968, 3月號前揭論文pp. 338—341

(37) 法律第2號로公布된臨時官制는國務會議는國務員으로組織한다고규정하고있다.

(38) 大統領國務院議政院관계는改憲案討議中提案者인政府代表가「國務總理가責任內閣을組成한다」고말한것에서도엿볼수있다(國史編纂委員會編, 前揭書三, 所收(p. 447)臨時議政院關係資料)그리고臨時大統領의任期의規定이없는것은「臨時인故로」그렇게했다고하면서한실은獨立運動期間中에는臨時大統領과國務總理는更迭하지않아야한다는安昌浩의意見에의한듯하다.(先耀翰前揭書p. 273)

되 漢城政府體系로 설치했던 歐美委員部가 統合政府의 機關이 되어 맡아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態度가 美洲地域까지를 管轄하고 있었던 中央政府(國務院과 臨時議政院)의 反撥을 사게 한 것은 당연했으며 現地實情에 어두운 指示로 上海政局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歐美委員部가 徵收事務를 맡아보고 徵收資金을 거의 臨時大統領의 外交活動費에 쓰게 하고 極少額만 財務部로 送金되자 國務院에 막대한 곤란과 달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二元的 行政體制가 빚은 혼란은 臨時大統領과 國務總理의 對立으로 더욱 激化되었다. 李東輝는 三·一運動전 李承晚과 鄭翰景이가 파리講和會議에 가 있던 美國大統領에게 한국을 당분간 國際聯盟의 委員統治(mandatory)를 청원한 사실을 들고나와 大統領辭退運動을 벌였으며 三한 그는 國務總理로赴任해 오기 전 이미 共產主義者로서 露領에서 「불세비끼」의 軍事的 後援下에 共產主義運動을 領導한 자인 지라⁽³⁹⁾ 臨時大統領에게 상의 없이 國務會議決議안으로 「非人」에게 한국 獨立運動援助를 고심할 代表를 派遣하기도 했고⁽⁴⁰⁾ 또 國務總理職에 있으면서 上海에서 高麗共產黨을 지도하는 등 民族主義運動으로 끝쳐있던 臨時政府에 思想의 波紋을 일으키기도 한 것이다.

이로서 内閣은 혼란에 빠져 次長級들은 李東輝總理의 衝動으로 李大統領을 배척하는 사태로 번지고 또 總長級들은 辞表를 提出하는 소동을 빚어 결국 대통령의 時局收拾만이 요청되었기에 臨時議政院은 院의 決議로 李承晚臨時大統領을 上海에 오게하여 政務를 整理하게 했다. 李承晚은 많은 期待를 받으면서 1920年 12月 8일에 上海에 到着했다. 그러나 그의 現狀維持論으로 時局은 수습되지 않았으며⁽⁴¹⁾ 마침내 李東輝總理는 辞任하고⁽⁴²⁾ 李承晚臨時大統領은 内務總長 李東寧으로 國務總理代理를 보게하다가 法務總長 申圭植으로 바꾸고 李東寧, 申圭植, 虞伯麟, 李始榮, 孫貞道의 5人을 國務員으로 改編한 다음 李大統領은 太平洋會議에 대비코자 1921年 5月 20일 美國으로 떠났으며 閣員들의 不變動을 力說해 오던 安昌浩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政府에서 물러났다(1921年 5月 11日). 이와 같이 李承晚 臨時大統領이 上海에 渡來한 후에도 事態를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閣員中에 辞職하는者가 많았

(39) 梁好民著, 北韓의 이데오로기와 政治 第一卷, pp 5—6. 李東輝는 卓越한 共產主義指導者로서 1918年(月)「하바로브스크」에서 韓國共產黨의 始시인 「韓人社會黨」을 創立하였고 그후 즉 1921年(月)에는 黨名을 「高麗共產黨」으로 바꾸고 黨本部를 上海에 두게 되었다.

(40) 國務會議에서는 呂運亨, 安恭根, 韓馨權 3人을 파견하기로 했었으나 李東輝는 그의 心腹인 韓馨權만을 보내고 그가 일어온 資金은 秘書 金立이 流用하여 政府에 헌납치 않아 뒤에 큰 紛爭 거리가 되었다.

(41) 李承晚은 現狀維持 즉 종전대로 決裁權의 國務總理에의 委任과 國務總理制의 國務委員集體制로의 變更등의 改革論을 고집하는가 하던(김원용, 前揭書, pp. 479—80) 李東輝는 議院制(內閣責任制)로 改革할 것을 주장하고 臨時政府를 시베리아로 移轉할 것도 주장한 바 있으며 한편 李承晚, 安昌浩은 大統領制를 고집하는등 議論이 분분하였다. (金正明, 前揭書, 朝鮮獨立運動 II, 447)

(42) 李東輝는 「自身의 刷新議案을 政務會議(總長 次長級의 連席會議一筆者)에 提出했으나 一言의 審議도 え이 목살되었기 때문에 自身의 實力으로는 이 難關을 打開하기 어렵다.」는 宣布文을 내고 辞職했다. 1921年 1月 24日條(前揭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民族獨立年鑑 同日條 p 266

으며 특히 最高指導級인 李承晚이 上海를 떠나고 또 李東輝, 安昌浩가 辭任하여 政府를 떠나자 臨時政府의 運營은 混亂을 빚고 受難을 免치 못하였다.

이상에서 보아 온 타와 같이 大韓民國臨時政府는 1919年 三·一運動을 契機로 해서 國內外에서樹立된 諸臨時革命政府를 統合한 唯一한 正統的 臨時政府이었다. 그후 그때 그때의 政治的 狀況에 따라 비록 數次의 改憲이 있었고 그 指導體系의 少少의 混亂과 變更은 있었으나 1945年 儀國하기까지 27년의 장구한 期間동안 그 法統을 무난히 이어 오면서 國內外同胞들의 唯一上 民族代表機關으로 獨立運動을 展開해 왔으며 外交의 主體가 되고 民族의 등불이 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國內에선 日帝와의 消極的인 協力하에서나 監視下에서 民族의 自覺을 啓發한 一連의 文化活動이나 宗教活動을 볼 수 있었고, 崙運亭을 中心으로 하는 地下組織인 建國同盟의 活動이 있기는 했으나 國外에서 獨立運動을 지도한 大韓民國臨時政府가 國내에 實質的인 組織基盤이나 連絡網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獨立運動의 當然한 歸結로 美軍時期엔 正統性確立를 위한 极심한 左右의 思想的 闘爭이 誘發되고 그 闘爭過程에서 左翼이 脱落되면서 自由民主主義가 政治的으로 正統한 位置를 갖게 되었고 1948年 5.10選舉에 依한 大韓民國政府樹立이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1948年 憲法前文) 獨立精神을 繼承한 것임을 선명하고 있는 것은 大韓民國臨時政府가 오늘의 大韓民國政府의 起源임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五. 結語

以上 本論文에서 우리는 1910年 韓日合併이 强要되면서 國家의 正統性의 衰失과 總督政治成立에 1 출발하여 그와 같은 合併體制를 전면적으로 拒否하였던 1919年의 3·1民族運動까지의 日帝植民統治 初期 10年間의 總督政治行政의 展開와 이에 抗拒해서 民族의 主體性을 回復하기 위한 動員過程을 검토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日帝가 감행한 世界에 類例가 없는 憲兵警察制는 軍事專制體制를 뒷받침한 것으로서 韓民族의 主體性과 韓國人의 自主意思를 壓迫抹殺하고자 했으며 마침내 謹族의抗爭과 世界思潮에 의하여 여지 없이 꺾이고 말았다.

1919年 官制改正으로 憲兵警察制를 普通警察制로 고치고 소위 文化政治를 표방하였으나 이는 外面의이며 假節的인 政策일뿐 根本의인 面에서는 오히려 陰性的 壓迫과 收奪의 連續吳深化이 있다.

여기서 實質的인 總督의 侵略統治의 制度化 및 展開過程을 政治行政面에서 分析하여 밝힌 동시에 總督政治行政이 韓民族이라는 歷史主體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變化하고 어떻게 作用하였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다.